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046

제출연월일: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고"를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41조제1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의5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9조의6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를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 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3조 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제5항·제22조제3 항 후단·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초 조사) ① (생 략)	제9조(기초 조사) ① (현행과 같
	승)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	②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	
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보고</u>	<u>제출 이 경우 국토</u>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	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내용을
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
알려야 한다.	<u>다.</u>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	②
원으로 조성된다.	<u>.</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한다.	<u>.</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	7 <u>해당 지방자치단체</u>
는 사항	의 조례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②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	<u>운용상황에 관한 자</u>
게 할 수 있다.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5(물류 교통・환경 정비	제59조의5(물류 교통・환경 정비
지구의 지정) ① ~ ③ (생 략)	지구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4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9조의6(물류 교통·환경 정비 지구 지정의 해제) ①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u>통보</u>
제59조의6(물류 교통·환경 정비
지구 지정의 해제)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통보</u>
(5) (현행과 같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 ④ (생 략)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5
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	
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3
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③
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	